

‘1441일 대장정’...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대응체계 개편에 이달 말까지 2020년 첫 가동 이후 4년여만 광주 8곳·전남 50곳 운영 종료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서 검사

“길었던 사투 끝에 운영이 종료되니까 개운한 느낌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2020년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해 온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는다.

28일 광주·전남 등에 따르면 이달 말(광주 30일·전남 30~31일)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다.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1441일 만이다.

지난 27일 찾은 광주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입구를 들어서자 곳곳에 30일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다는 안내문이 보인다.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이곳을 찾은 40대 김모씨는 익숙하다는 듯 마스크를 살짝 내려 검사를 받은 뒤 돌아갔다. 접수부터 검사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같은날 찾은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상황은 마찬가지.

진료가 잠시 멈춘 점심시간 이후 이곳을 찾은 이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을 접수처에 내고 자연스럽게 검사장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를 사흘 앞둔 28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의료진들이 1441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으로 들어가는 한 외국인도 있었다.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다는 한 외국인은 “일터에 제출하기 위해 그간 이곳을 자주 찾았다”며 “오랜시간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서 간호사들과 터울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됐다. 정말 감사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박모씨는 하루 평균 10~20여명이 검사를 받으러 온다고 말했다.

그는 “선별진료소를 찾는 사람들이 줄면서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있다는 게 체감된다”며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보람도 많이 느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조치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 체계 개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기존 수준인 ‘경계’로 유지하고 PCR 검사 건수 감소, 보건소 정상화 필요 등을 이유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지난 2020년 1월20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소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광주 8개소(보건소 5, 의료기관 3), 전남 50개소(보

건소 22, 의료기관 28)는 이달 말 검사를 끝으로 운영이 종료된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 10병상도 전부 해제한다.

광주·전남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난 4년간 PCR검사 누적 건수는 광주 408만5820건(12월23일 기준), 전남 752만건으로,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감염증 확산 방지에 힘써왔다.

개편에 따라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며 코로나19 PCR검사를 받기 위해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 및 고위험군은 국비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을 통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60세 이상인 자, 만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입원환자 △고위험입원환자(중환자실·혈액암·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요양병원·정신 의료기관·요양 시설 입소자 △상기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 등이다.

△상기 대상자 외 입원 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PCR 및 RAT(신속항원검사) 검사 시 검사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한편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영화광주시복지건강국장은 “선별진료소는 문을 닫지만 최근 인플루엔자를 비롯해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정성이인턴기자 sanga.jeong@jnilbo.com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반드시 사죄·배상”

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日, 5천만~1억5천만원씩 배상”
피해자측 “승소하니 만감교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 각 5000만~1억5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관련 ‘2차 소송(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인정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1억5000만원 배상하라고 원심을 확정하 바 있다. 이번 판결 역시 2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을 배척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판시했다.

원고 홍씨 등 피해자들은 1944년 히로시마 미쓰비시 기계제작소로 끌려가 강제 노역 생활을 했고, 이듬해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부상을 당하거나 피폭당한 채 방치됐다 자력으로 귀국했다. 이들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피해자 14명 가운데 13명이 사망한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측은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서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상태였고, 유일한 생존자인 홍씨는 지난 2015년 사망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이경자씨 등 2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1944년 미쓰비시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강제징용돼 같은 해 도난카이 지진으로 사망한 최정례씨의 조카며느리다. 또 다른 원고 김영옥씨 역시 같은 시기 나고야항공기제작소서 노역 생활을 한 피해 당사자다.

이날 승소 확정 직후 피해자들과 대리

인, 시민단체 등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세를 하며 환호했다.

이씨는 “(최정례씨와) 일면식도 없지만 돌아가신 시할머니의 억울한 한을 대신에 이렇게 소송에 나서게 됐다”며 “소송 제기한 지 7~8년 됐다. 오래 살았으니 이렇게 승소라도 하는 거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김씨는 “일본군 ‘위안부’로 보는 시선 때문에 오랫동안 일본에 다녀온 것을 숨기며 살아왔다. 시어머니는 ‘저런 며느리

는 볼 수 없다’며 결혼을 극구 반대했다”며 “미쓰비시가 몇십억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풀릴 수 있겠다. 죽기 전에 미쓰비시로부터 꼭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다”고 촉구했다.

일본 측은 유감을 표하고 있다. 미쓰비시는 성명을 통해 “일한 양국 간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 및 절차는 극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여인숙 주인 잔혹 살해 70대 징역 23년 선고
檢 “반성 태도 없어” 항소

4년째 세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76)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만을 비난하며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3년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35분께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주인 B(73)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의 머리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숙 장기 투숙객인 A씨는 평소 만취 상태로 기물을 부수며 난동 부리다 B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B씨와 다투고 B씨가 자신을 칼본다는 생각에 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이 범행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성현 기자